

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10. 25.

제 안 자 : 김법기 의원외

□ 수정 이유

- 조문 이해의 용이성, 명확성, 통일성을 기함은 물론, 현실 운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

□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4조제2항제1호의 “건설담당 국장”을 “주택건설관련 국장”으로 함
- 안 제8조제2항중 “회의개최 3일전까지”를 “회의개최 7일전까지”로 함
- 안 제4장 보칙을 삭제함

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2항제1호의 “건설담당 국장”을 “주택건설관련 국장”으로 하고

안 제8조제2항중 “회의개최 3일전까지”를 “회의개최 7일전까지”로 하며

안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| 제정안 | 수정안 |
|---|--|
|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|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|
| 제4조(구성) ① ② (생략) 1. <u>건설담당 국장</u> 2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인 이내 3.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인 이내 | 제4조(구성) ①~② (제정안과 같음) 1. <u>주택건설관련 국장</u> 2. “현행과 같음” 3. “현행과 같음” |
| 제8조(회의) ①(생략)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·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. 다만 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(생략) | 제8조(회의) ① (제정안과 같음) ② 회의개최 7일전까지 ③(제정안과 같음) |
| <u>제4장 보 칙</u> | <u>(보칙 삭제)</u> |
| <u>제13조(과태료의 징수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2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」의 예에 의한다.</u> | |